



농업생명과학대학

수신 대학원 학부 · 과

(경유)

제목 2021학년도 2학기 석·박사학위 논문제출 기한연장(2년) 신청 안내

- 1. 관련: 「학위수여규정」 제11조제2항 및 제3항
- 2. 2021학년도 1학기 석·박사학위 논문제출 기한연장(2년) 신청 대상자를 **2021.7.27.(화)까지**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*기한 내 미신청시 **신청자 없음**으로 간주)

가. 관련 규정

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(학위논문 제출기한)

② 석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,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(원)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.

④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·출산 기간(임신·출산의 경우 1회당 2년)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학생은 위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(원)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나. 작성 서식

학부(전공)	과정	학번	성명	지도교수	수료년월일	사유

- 붙임 1. 논문제출 기한 확인방법 1부.
 2. 논문제출 기한연장 신청서 1부. 끝.

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



선임주무관 **오하림**

교무팀장 **조영숙**

행정실장 **서정훈**

교무부학장

2021.7.15.
전결
김진모

협조자

시행 농업생명과학대학-20411 (2021.7.16.) 접수 ()
 우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200동 3018호(농생대 교무행정실) /http://cals.snu.ac.kr
 전화 02-880-4507 전송 02-873-2009 /great@snu.ac.kr / 공개